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6-509호

20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노후화된 5대 도시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사업장 환경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20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서울시 소재 의류봉제 · 기계금속 · 인쇄 · 주얼리 · 수제화 업체

- 해당업종 : 의류봉제(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기계금속(C24, C25, C29), 인쇄(C18), 주얼리(C331), 수제화(C15)

3. 선정방법 : 사업장 현장방문 조사 및 심사 후 선정

-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특수건강검진(VOC 기준치 이상),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보조금 환수 있음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첨부 필수
우선요건	‣ (1순위) **휘발성유기화합물(발암물질)**이 안전기준*를 초과이거나, **화재위험, 감전/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 ※ 발암물질 저감장비 필수지원품목(덕트, 산업용환풍기)으로 지정 * 고용노동부 안전기준 :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 (0.6mg/㎥ 이하) ‣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먼지 등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3순위) **분진, 조도, 소음, 공기질** 등의 위해요소가 안전기준 이하*인 업체 * 고용노동부 안전기준 : 분진(10㎎/㎥ 이하), 조도(600LUX이상), 소음(80dB 이하)
제외요건	‣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19~'25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 개선 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사업 등) **기 수혜업체 제외**

4.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720만원 지원(시비 70%, 구비 20%) ※ 자부담 10% 별도

5. 지원조건

-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는 사업주 자비로 부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간 지원 물품·설비 가동 및 사후관리
-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안전기준 초과업체는 특수건강검진 수검

6. 지원품목(34개)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덕트, 산업용환풍기)우선 지원

※ 붙임1 [참고자료] 참조

7. 사업신청

가. 접수기간 : 2026. 4. 15.(수) ~ 4. 22.(수)

나. 신청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 팩스 불가)**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0314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중학동 19), 더케이트윈타워 B동 6층,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 (봉투 앞면 지원업종 기재)

※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당해 연도에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 업체는 신청 불가

○ 이메일 : therhymer@mail.jongno.go.kr

다. 제출서류

① 20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6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⑥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 법인사업자 이거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2)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명시)

〈 참고 자료 〉

※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사업자 등록 확인	ㅇ **사업자등록증**	o 국세청 홈택스(☎ 126) (www.hometax.go.kr)
소공인 확인서류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o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 1357)
세금 체납확인	ㅇ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o 국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www.hometax.go.kr) o 지방세: 정부24 (http://www.gov.kr)
상시근로자 수 확인	ㅇ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에 나와 있는 근로자 수 확인	o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미발급한 경우 대체 확인서류

<table>
<tr><td rowspan="3">매출액 확인서류</td><td rowspan="3">3개 서류 中 택1</td><td colspan="2">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td><td rowspan="3">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td></tr>
<tr><td colspan="2">② (일반·간이과세자)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td></tr>
<tr><td colspan="2">③ (면세사업자)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td></tr>
<tr><td rowspan="5">상시근로자 확인서류</td><td rowspan="5">5개 서류 中 택1</td><td rowspan="4">법인사업자 이거나 상시근로자가 <u>있는</u> 경우</td><td>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td><td>국세청 홈택스</td></tr>
<tr><td>②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td><td rowspan="4">국민건강 보험공단</td></tr>
<tr><td>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td></tr>
<tr><td>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td></tr>
<tr><td>상시근로자가 <u>없는</u> 경우</td><td>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명시)</td></tr>
</table>

8. 사업추진절차

모집 신청 접수	➡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	보조금관리 위원회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	사업시행	➡	설치점검·안전컨설팅 특수건강검진 준공처리	➡	보조금 지급
’26.4.15(수) ~ ’26.4.22(수)		’26.4 ~ 5월		’26. 6월		’26. 7~11월		’26. 7~11월		’26. 9~11월

9. 신청업체 작업환경 현장조사(환경취약 작업장 엄선・지원)

○ 조사내용 : 위해요소 조사, 지원대상의 적격성, 개선대상, 기대효과 등 현장진단

○ 신청 후 현장조사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 사업 신청 후 개별 확정 통보를 받은 다음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지원여부와 금액 범위는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내부 심사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탈락 될 수 있음

10. 선정결과 발표

○ 선정방법 : 실태조사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위원회, 내부심사 후 최종결정

○ 결과발표 : ‘26. 6월(예정),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 및 추후일정 안내

※ 설비 시공업체 선정 기준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구 분	세부기준
공통	○ 사업자 등록이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된 업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공사·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구한 후 시행 必**

11.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금액 확정 시 종로구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선부담 후지원 : 준공검사 후 사업비 지급(자부담 100% 지급 증빙 후 교부)

○ 사업완료 후 7일 이내 사업비 정산내역(입금증 등) 등 제출

12. 사후관리 및 보조금 환수

○ 지원받은 사업장 대상으로 물품 및 설비 운영 조사를 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

1. 보조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지원받은 물품, 장비 등을 제공 및 판매한 경우
5. 지원 대상자가 물품 구매, 설비 설치를 대가로 현물, 현금 등을 제공받거나 자부담금 대납, 부가세 지원 등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폐업, 다른 시도 이전 등으로 지원받은 물품·설비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용기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용기간은 지원업체 보조금 지급일,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변경일, 보조금 환수 사유 적발일(현장점검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 홍수, 태풍, 화재 등 재난에 의해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13. 기타 유의사항

가. 대상 확정 이전 사업 진행(시공·물품 구매 등)후 미선정에 따른 비용 부담은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구청 사업 선정 확정통보 이후 사업 진행

나.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함

라. 사업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마.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바. **신청서 제출 이후 정정 또는 보완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사. 심사·선정 과정에서 선정 업체 수 및 공모 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 등이 조정·변경될 수 있음

아.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함

자. 신청서의 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차. 사전신고 없이 사업장폐업 및 휴업 시 보조금 환수 조치

카.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타. 추진일정은 서울시 사업 공모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파. 결정된 지원품목은 **다른 품목으로 변경 불가**

14. 문의처 : 종로구청 지역경제과 주얼리패션팀(☎ 02-2148-2264)

붙임 [참고자료]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현황, 주업종코드 관련 자료. 끝.

참고자료1 지원품목 현황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현황

○ 지원품목(34개) : 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비 고
위해요소 제거 (12개)	소 화 기 (필 수)	조기 진압을 통한 화재예방	미설치 및 내구 연한 경과 시 필수 지원
	화 재 감 지 기 (필 수)	연기, 온도를 감지해 화재 시 대피 경고 알림	
	누 전 차 단 기 (필 수)	과부하 전기 차단으로 화재예방	
	배 선 함 설 치 (필 수)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덕 트 (D u c t) (필 수)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발암물질 노출 시 필수 지원 신 규
	산 업 용 환 풍 기 (필 수)	창 또는 벽에 설치하여 실내·외 공기 정화	
	노 후 배 선 정 리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순 환 식 보 일 러	다림질용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요인 최소화	
	폐 수 용 배 관	스팀다림질 이용 시 수질오염 유발요인 감소	
	산 업 용 흡 입 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수거용(고정)	
	이 동 형 집 진 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미물질 수거용(이동)	
	레 이 스 웨 이	전기화재 예방	
근로환경 개선 (14개)	공 기 청 정 기	작업장 먼지 제거로 작업장 공기질 일부 개선	
	냉 난 방 기 (또 는 냉 방 기)	작업장 적정 온도 유지	
	라 디 에 이 터	작업자 난방 온도 유지	
	제 습 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산 업 용 청 소 기	작업장 청결관리	
	L E D 조 명	조도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바 닥 개 선 공 사	작업장 노후 장판, 보수가 시급한 바닥 교체	
	벽 면 도 배 및 도 색	곰팡이 제거 등	
	수 납 함 · 적 재 대	작업도구 및 원부자재 보관, 안전통로 확보	
	창 호 개 선	창호 개선	
	전 열 교 환 기	열교환 방식으로 실내외·공기 순환으로 적정 온도 유지	
	콤 프 레 셔	노후 콤프레셔에서 나오는 소음 완화	舊흡음방음설비
	서 브 모 터	노후 서브모터에서 나오는 소음 완화	
	가 습 기	적정 습도를 유지하고, 화재 예방	
작업능률 향상 (8개)	바 큠 다 이	다림질 작업효율 향상	
	작 업 대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미 싱 보 조 테 이 블	미싱작업 효율성 증대	
	작 업 의 자	봉제작업자 편의 제공	
	컨 베 이 어	물품 이동용(전동식, 롤러식)	
	연 단 기	재단 등 작업효율 향상	
	오 염 세 척 기	작업품질 향상	
	곤 돌 라	무거운 짐 운반지원	

※ 34개 지원품목 외에도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전문가 컨설팅후 최종 확정

※ 자산성 품목 중 업종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산성 품목(재봉기, 인쇄기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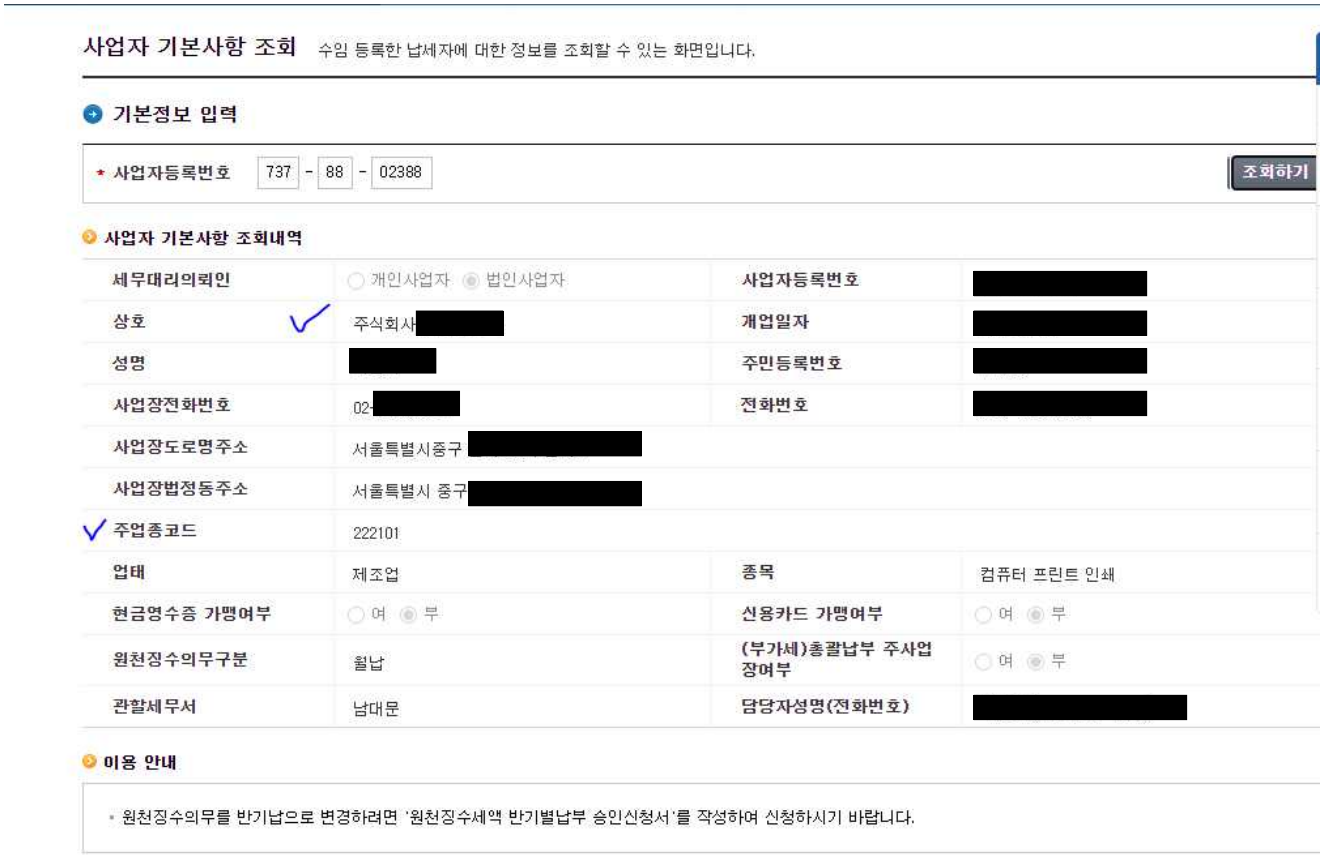
참고자료2 주업종코드 관련

ㅇ 주업종코드 비교표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주업종코드(국세청)
의류봉제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73001, 173004, 173006, 173009, 181101, 181103, 181105, 181109, 181110, 181201, 181202, 181203, 181204, 181205, 181206, 181207, 181208, 181209, 181211, 182001
기계/금속	C24 (1차 금속 제조업)	271101, 271102, 271103, 271104, 271201, 271202, 271204, 271205, 271206, 271207, 271208, 271901, 271902, 272100, 272101, 272102, 272103, 272200, 272201, 272202, 272203, 272300, 272301, 272302, 272900, 273101, 273102, 273200, 273201, 273202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81100, 281101, 281103, 281104, 281105, 281106, 281201, 281202, 281204, 281205, 281300, 289101, 289102, 289103, 289104, 289201, 289202, 289205, 289206, 289207, 289208, 289301, 289302, 289303, 289304, 289305, 289306, 289901, 289902, 289903, 289908, 289910, 289913, 289914, 289915, 289916, 289917, 289918, 381000, 381003
	C29	281102, 291100, 291101, 291200, 291201, 291202,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주업종코드(국세청)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300, 291301, 291401, 291501, 291502, 291503, 291504, 291901, 291902, 291903, 291904, 291905, 291906, 291907, 291908, 291909, 291911, 292100, 292201, 292202, 292203, 292204, 292205, 292206, 292300, 292400, 292401, 292500, 292600, 292601, 292901, 292902, 292903, 292905, 292906, 292907, 292908, 292909, 300201, 300202	
인쇄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22101, 222102, 222103, 222104, 222105, 222201, 222202, 222203, 223001	
주얼리	C33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101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69501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수제화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2001,192004 192005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91100, 191200, 191201, 191202,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ㅇ 주업종코드 확인 예시(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수임 등록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737 - 88 - 02388 조회하기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

세무대리의뢰인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redacted]
상호	주식회사[redacted]	개업일자	[redacted]
성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사업장전화번호	02-[redacted]	전화번호	[redacted]
사업장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중구 [redacted]		
사업장법정동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redacted]		
주업종코드	222101		
업태	제조업	종목	컴퓨터 프린트 인쇄
현금영수증 가맹여부	○ 여 ◉ 부	신용카드 가맹여부	○ 여 ◉ 부
원천징수의무구분	월납	(부가세)총괄납부 주사업장여부	○ 여 ◉ 부
관할세무서	남대문	담당자성명(전화번호)	[redacted]

이용 안내

- 원천징수의무를 반기납으로 변경하려면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

사업자 595-61-00630 조회하기

- 사업자등록사항 상세화면 도움말

상호	[redacted]	성명(대표자)	윤****	개업일자	[redacted]
주업종코드	369101 부업종코드	주업태명	제조업	주종목명	귀금속(369101)
사업자구분	일반과세자	총괄납부번호		사업자단위과세여부	부
원천징수구분	월납	개별소비세구분	해당없음	의제주류면허	해당없음
동업기업여부	○여◉부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 계속 사업 중 또는 휴업 중이거나 전년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의 기본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사용자변경한 경우 사용자변경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의 기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용자변경 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정보만 보여집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